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uty of Compliance with Ruling i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Light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Focusing on Judgements b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

이 형 석*
Lee, Hyeong-Seok

목 차

- I. 서론
- II.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의무의 근거
- III.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에 관한 사례
- IV. 결론

국문초록

모든 인권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성별, 인종, 민족 등의 어떠한 조건에도 개의치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주인권협

논문접수일 : 2015. 02. 14.

심사완료일 : 2015. 03. 08.

게재확정일 : 2015. 03. 11.

* 법학박사·원광대학교 봉황인재학과 연구교수

약과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 제도들은 국내 사법 체계가 무너졌을 때,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와 배상 추구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다.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로 구성된 미주 지역 인권보호체계는 미주 전역에 걸쳐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체계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실효적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지역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여 해당 국가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린 판결을 해당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주인권협약상의 권리내용은 문언적,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주인권협약은 명문으로 체약국에게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판결준수의무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체결한 지역적 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이 제소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결하면 해당 국가는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등으로 판결을 준수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아직 경제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안정과 발전을 최우선 국정운영관제로 추진하는 외형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다음 시기나 다음 세대로 미루거나 당연한 희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근본이념을 기반으로 외형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 의무의 근거와 이행 실태,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인한 판결준수의무의 이행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재판소, 지역적 인권보장, 판결준수의무, 이행 조치

I. 서론

지난 20세기는 인류가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보편의 언어를 발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개별국가 권력 행사 목적과 과정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중대한 성과를 거둔 세기로 평가할 수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전 인류의 이름으로 인권의 국제적인 기준과 개별국가의 책임을 천명하였다.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 권리’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은 인권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적 인권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주인권협약은 유럽인권협약 다음으로 결성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이다. 그 외 지역적 인권협약은 아프리카 연합이나 아랍연맹 등이 있지만, 미주나 유럽정도로 실효적이지 않다. 미주인권보장제도는 미주인권선언과 미주인권조약 등 지역인권조약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는 개인과 정부로부터 인권침해 청원을 수리하고 그 심사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권고한다. 미주인권보장제도에서 개인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미주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미주인권재판소에 사건을 직접 제소할 수 없다. 미주인권재판소의 사건의 제소는 미주인권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럽과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와 차이가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1979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988년에 최초로 Velásquez Rodríguez v. Honduras 사건을 판결하였다. 본격적으로 미주인권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것은 남미 국가들을 지배한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된 1990년대부터 이다. 특히 1994년부터 매년 사건이 제소되었고, 2003년에는 제소하는 사건 수가 10건을 초월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제소된 사건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건 당사국에 명령한다.¹⁾

지역적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도, 해당국가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인권재판소의 기본 취지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미주인권협약상 판결준수의무의 근거와 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미주인권재판소가 해당 국가의 인권침해 결정 및 배상, 국내법 개정 조치 등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명령이 미주인권협약 체결국 내에서 이행되는지 여부와 판결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결준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다양한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의무의 근거

1.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재판소 규칙상 근거

국가는 일반적으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약법 조약²⁾ 제26조에서도 ‘효력을 가진 모든 조약은 체결국을 구속하고, 체결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법 조약 제27조는 ‘체약국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약불이행을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미주인권협약은 대부분의 미주 국가들이 비준³⁾하였고, 미주인권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정⁴⁾하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 강제관할

1) 2012년에 제기된 쟁송사건은 12건이고, 판결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단계에 있는 사건은 138건이다. IACHR, Annual report 2013, p.9.

2) 2014년까지 체결국 수는 114개국이고, 서명 국가는 45개 국가이다. 중남미에서 비준하지 않은 주요 국가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엘살바도르이다.

3) 미주인권협약은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가이아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비준하였다.

권 인정국가는 미주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신속·완전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⁵⁾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준수의무의 근거는 미주인권협약 제62조⁶⁾, 제65조⁷⁾, 제67조⁸⁾, 제68조 제1항⁹⁾, 미주인권재판소 규칙 제24조¹⁰⁾, 제30조¹¹⁾이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체약국에게 판결을 준수 시킬 권한은 강제관할권의 고유한 내용이다.¹²⁾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은 국내법으로 협약의 규정과 효과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인권협약의 실제적 규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절차규칙 등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의 준수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인권협약 상 인

- 4)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가이아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미국, 도미니카, 자메이카, 그레나다이다.
- 5) *Atala Riffo and Daughters v. Chile*(Monitoring Compliance), IACHR, 26 Nov. 2013, considering para. 2.
- 6) 미주인권협약 제62조 제1항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합의가 없어도 바로 재판소의 관할권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소의 관할권은 재판소에 제기된 협약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포괄한다. 단, 사건의 당사국들이 위조항에 의한 특별선언이나 특별합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7) 미주인권협약 제65조 미주기구 총회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재판소는 지난해의 재판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 각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소는 국가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적절한 권고와 함께 명기한다.
- 8) 미주인권협약 제67조 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소는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요청은 판결의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9) 미주인권협약 제68조 제1항 협약의 당사국은 자신이 당사국인 사건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10) 미주인권재판소 규칙 제24조 제1항 공청회는 재판소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개되어야 한다. 제2항 재판소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그 심의는 재판소가 다른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밀로 해야 한다. 제3항 재판소의 결정 및 의견은 공식적인 회기에 제출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이 문서에 의하여 통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결정, 판결 및 의견은 재판관의 개별적 투표와 의견 및 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정보 또는 그 배경이 되는 정보를 첨부하여 공표한다.
- 11) 미주인권재판소 규칙 제30조 재판소는 OAS총회 정기회 회기에 전년도 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소는 국가가 재판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재판소의 사항에 관한 한 미주인권기구를 개선할 방법에 관한 제안 또는 권고를 OAS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2) *Atala Riffo and Daughters v. Chile*, *Supra* note(4), para. 11.

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¹³⁾ 미주인권재판소가 내린 본안, 배상, 비용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을 체약국은 신속·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준수의무는 해당 국가의 모든 권한과 기관을 구속한다.¹⁴⁾ 국가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명령 이행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¹⁵⁾

2. 미주인권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체약국이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을 실행할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미주인권협약이 국내법 상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와 미주인권협약이 어떠한 조건으로 실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현재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의 헌법은 대부분 군사정권시대에 제정되었고, 군사정권시대 이후 개정되었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현재는 근대적,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사정권 하의 인권침해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권보장 규정을 추가하였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의 헌법규정과 미주인권협약과의 관계는 헌법 우위에 있는 지위, 헌법과 동등한 지위, 법률 우위의 지위, 법률과 동등한 지위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협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이다. 미주인권협약을 헌법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이다.¹⁶⁾ 이들 국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직접 적용한다.¹⁷⁾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콜롬비아가 당사국이 되는 조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국제재판소의 판례법은 기본적 권리에 관한 헌법상

13) Cesti Hurtado v. Peru(Monitoring Compliance), IACHR, 26 November 2013, para. 5.; Ivcher Bronstein v. Peru(Competence), IACHR, 24 September 1999, Ser. C, No.54, para. 37.; Five Pensioners v. Peru((Monitoring Compliance), IACHR, 24 November 2009, para. 7.

14) Baena Ricardo et al. v. Panama(Competence), IACHR, 28 November 2003, Ser C, No. 104, para. 60.

15) IACHR, op.cit., p. 13.

16) Allan R. Brewer-Caría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Study of Amparo Proceedings*, Cambridge, 2009, p.32.

17) IACHR, op.cit., p. 32.

규칙의 의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된 해석기준을 구성한다'¹⁸⁾고 판시하였다.¹⁹⁾

둘째, 협약이 헌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이다. 미주인권협약이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이다. 이들 국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²⁰⁾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국내법이 미주인권협약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법률이 위헌이면 무효로 선언한다. 또한 조약이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국내법이 해당 조약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독한다'고 하였다.²¹⁾ 또한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은 아르헨티나 사법부를 구속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결정은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다.²²⁾ 페루 헌법재판소는 '미주인권재판소 판결과 절차에서 미주인권협약의 해석은 페루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헌법을 포함하여 페루정부를 구속한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은 국내법원의 판결이유를 구속한다'고 하였다.²³⁾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은 볼리비아 헌법 해석상 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의 목적과 인권에 관한 판결을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²⁴⁾ 이들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이 직접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어도 미주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미주인권협약의 헌법상 지위와 미주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해석과 결정에 구속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18) Cabrer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Mexico(Preliminary Objection,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26 November 2010, Ser C. No.220, para. 232.

19) IACHR, op.cit., p. 33.

20) IACHR, op.cit., p. 38.

21) IACHR, op.cit., pp. 38-39.

22) Cantos v. Argentina(Merits, Reparation and Costs), IACHR, 20 November 2002, Ser. C, No.97, para. 62.

23) Tribunal Constitucional de Peru, Pleno Jurisdiccional, 19 June 2007.

24) Supra note(16), para. 227.

셋째, 조약이 헌법보다 하위에 있지만,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이다. 코스타리카 헌법원(Constitution Chamber of the Supreme Court)은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인권협약을 해석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국내법을 평가하는 권한은 쟁송사건과 단순한 권고적 의견에서도 해석된 규칙을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²⁵⁾

넷째, 조약이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²⁶⁾, 멕시코, 우루과이이다. 이러한 국가는 국내법이 미주인권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당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국내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²⁷⁾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자동집행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체약국의 국내법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체약국의 법원과 입법부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을 준수하고 있다.²⁸⁾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한 국가가 조약지배의 원칙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미주인권협약을 헌법이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조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미주인권협약을 포함한 인권규범의 국내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⁹⁾ 최근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를 거부한 일

25) Supra note(16), para. 226.

26) 도미니카 공화국 대법원은 미주인권협약 규범과 기관에 의한 해석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사법부를 구속한다고 판시하였다. Supra note(17), para. 228.

27) Jo M. pasqualucci,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mbridge, 2013, p. 301.

28) Supra note(16), para. 225.

29) IACHR, op.cit., p. 36. 베네수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부분 차베스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베네수엘라 헌법재판소는 ‘미주인권재판소는 베네수엘라 국회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명령하여, 마치 식민지에 권한을 행사하듯이 국가권한을 침해하고, 주권, 독립국가, 정치적 판단, 헌법체제와는 절대 상충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Available at <http://corteidhblog.blogspot.com/> 참조.

부 국가들도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의 기반이 정비되고 있다.

3. 판결준수의무의 전개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준수의무의 관하여 판단한 사건은 강제실종과 관련된 Velásquez Rodríguez v. Honduras³⁰⁾과 Godínez Cruz v. Honduras³¹⁾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가 희생자 가족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여 판결준수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지불되어야 할 배상금액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상 형식을 결정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적 내용은 미주인권재판소가 결정한 배상 명령을 직접 감독하고 그 배상이 이루어지면 판결준수의무가 종료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실제 Velásquez Rodríguez v. Honduras 과 Godínez Cruz v. Honduras 사건에서 온두라스가 1996년에 배상금액을 지급을 완료한 후에 판결준수의무가 종료되었다.³²⁾ 미주인권재판소는 Aloeboetoe et al. v. Suriname 사건³³⁾과 Gangaram Panday v. Suriname 사건³⁴⁾에서 금전배상의 지불을 판결준수로 인정하였다. 그 후 El Amparo v. Venezuela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베네수엘라는 이 사건의 쟁점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뿐만 아니라 사건의 쟁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판결준수의무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 또한 ‘이 판결의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판결을 실행하였을 때 사건이 종결된다’고 판시하였다.³⁵⁾

30) Velásquez Rodríguez Case, Merits, Inter-Am. Ct. H.R., Judgement of July 29, 1988, Ser. C. No. 4.

31) Godínez Cruz v. Honduras(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8, 21 July 1989.

32) James L. Cavallaro & Stephanie Erin Brewer, “Reevaluating Reg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ase of the Inter-American Court”, 102 Am. J. Int’l L. 768, 2008, p.791.

33) Aloeboetoe et al. v. Suriname(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15, 10 September 1993, para. 96.

34) Gangaram Panday v. Suriname(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16, 21 January 1994, paras. 69-71.

El Amparo v. Venezuela 사건은 인권침해의 조사를 완료하고 책임을 소추할 때까지 사건은 계속된다고 미주인권재판소가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다.³⁵⁾

이 사건 이후 미주인권재판소는 Barrios-Altos v. Peru 사건³⁷⁾과 Durand and Uguarte v. Peru 사건³⁸⁾에서 ‘페루는 배상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주인권재판소에 판결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치를 취하였다.³⁹⁾ 미주인권재판소는 Cantoral Benavides v. Peru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 마다 판결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미주인권재판소가 제시한 판결준수에 관한 보고서는 표준적인 관행이 되었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배상결정에 관련된 준수예정표를 해당 국가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준수예정표는 국가가 금전을 배상금을 지불, 공식적 사과, 차후 반복적인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입법 및 행정상의 조치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2005년 미주인권협약 제65조를 근거로 판결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판결준수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⁴⁰⁾⁴¹⁾ 2010년에는 미

35) El Amparo v. Venezuela(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28, 14 September 1996, para. 64.

36) David C. Bauarte, “Strategizing for Compliance: The Evolution of a Compliance Phase of Inter-American Court Litigation and The Strategic Imperative for Victims’ Representatives”, 27 Am. U. Int’l L. Rev. 263, p.275.

37) Barrios-Altos v. Peru (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87, 30 November 2001.

38) Durand and Uguarte v. Peru (Reparations and Costs), IACHR, Ser. C, No. 89, 3 December 2001.

39) 1990년대 후반에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재판관들은 판결준수에 관한 감독의 광범위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 시기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이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주인권재판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미주인권재판소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간섭하고 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의 쟁송관할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David C. Bauarte, op.cit, p. 276.

40) IACHR, *Monitoring Compliance with Judgment, Order of the Court*, IACHR, 29 June, 2005.; <http://www.corteidh.or.cr/docs/supervisiones/general>

41) 2008년에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준수에 대한 감독 문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미주인권재판소 재판관 1인에서 3인의 재판관이 출석한 비공식적인 공청회 관행이 제도화하였다. IACHR,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Annual Report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4 June 2009.

주인권재판소의 절차규칙⁴²⁾이 개정되면서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절차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현재 미주인권재판소의 배상명령은 현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등의 민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가해자 조사, 기소, 처벌의무 등의 형사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일체적 배상(reparations)이 특징이다.

III.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에 관한 사례

미주인권재판소는 제소된 사건 당사국의 판결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판결준수의 감독 권한은 고유한 재판관할권의 행사와 특정한 사안에서 미주인권재판소가 내린 배상명령의 이행 및 실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이다.⁴³⁾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판결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미주인권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미주인권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판결준수여부, 준수여부에 대한 행동지침 결정 여부, 필요하다면 감독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판단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에 관한 근거는 미주인권협약 제68조 제1항 '협약의 당사국은 자신이 당사국인 사건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와 제2항 '손해배상을 명시한 판결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의 집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에 따라서 관련국에서 집행된다'에 있다. 이 규정은 판결준수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며, 판결의

42) 미주인권재판소 절차규칙 제64조 제1항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 및 그 외 결정의 준수를 감독할 절차는 해당국가의 보고서 제출과 희생자 또는 그 법적 대표자에게 해당 국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희생자 또는 그 대표자의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항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통하여 사건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 또는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미주인권재판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청회에 해당 국가와 희생자의 대표를 소집할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그 공청회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항 미주인권재판소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면 결정의 준수상태를 결정하고, 관련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5항 이러한 규칙은 미주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43) IACHR, op.cit., p. 13.

집행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판결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미주인권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각 사건에 부과된 배상 명령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세한 감독을 하고 있다.⁴⁴⁾

1.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명령의 유형

미주인권재판소는 배상명령을 내리면 배상의 범위에 따라 판결준수여부를 상세하게 감독한다. 미주인권재판소가 내린 준수명령에는 실질적, 정신적 배상 명령뿐만 아니라 그 외 배상의 유형에 관한 조치를 명한다. 미주인권재판소가 내리는 광의의 배상명령은 첫째,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보상적 손해배상조치(Measures of Compensatory)가 있다. 둘째, 미주인권재판소가 결정하는 원상회복 조치(Measures of rehabilitation)가 있다. 원상회복 조치는 불법으로 구금된 자의 자유의 회복,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환원, 직장 복귀, 사법, 행정 및 수사기관의 관련된 기록의 삭제, 원주민의 재산과 원주민의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 영역의 반환 등이 있다. 셋째, 만족조치(Measures of satisfaction)가 있다. 이 조치는 비금전적 손해 즉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고통 및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손해, 희생자의 생활상태 등 비금전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즉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국가의 책임 인정 및 공식적인 사과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⁴⁵⁾ 넷째, 재발방지의 보장(Guarantees of non-repetition)이다. 재발방지의 보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재발방지의 보장에 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다른 집단 또는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된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보장의 성질과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의 실시, 미주인권협약 상

44) IACHR, *op.cit.*, p. 17.

45) 미주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보상조치에 대한 예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 관련된 인권재판소의 판결문의 공개 및 보급, 사회적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IACHR, *op.cit.*, p. 19.

의 인권보장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조사, 기소, 처벌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동시에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또한 희생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법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명령의 이행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명령의 이행

1) 보상적 손해배상조치

보상적 손해배상조치란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은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불을 명하는 것이다.⁴⁶⁾ 미주인권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국가가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이미 보상을 한 경우가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국가가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보상하였다면, 그 보상이 인권재판소의 객관성, 합리성, 유효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⁴⁷⁾ 그 이유는 국내법으로 확립된 보상절차가 충분·공평하고, 희생자들에게 조기에 보상을 하였다면 희생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⁴⁸⁾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할 경우 미주인권재판소의 기준과 비하여 객관적, 공평성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기준을 적용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배상금액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는 산정금액이 판례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어야 인정한다'⁴⁹⁾고 하여 희생자의 입장에서

46) IACHR, *op.cit.*, p. 12.

47) Jo M. pasqualucci, *op.cit.*, p. 310.

48) Manuel Cepeda Vargas v. Colombia (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 IACHR, 24 November 2010, Ser. C, No.219, para. 301.

보상적 손해배상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국가의 인권침해로 희생자 유가족 58명은 이미 배상을 받았지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나머지 희생자 유가족에 관련된 *Gomes Lund et al v. Brazil* 사건⁵⁰⁾에서는 ‘지급받아야 하는 배상금액에 대한 국가의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절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배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희생자의 친족들이 투입한 비용 예컨대 희생자를 수색하는데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적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망한 실종자의 친족이 정부에게 배상 요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⁵¹⁾

2) 원상회복조치

원상회복조치의 이행이란 국가의 형사법 체제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인권침해 희생자에게 미주인권재판소가 희생자의 명예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죄의 선고를 무죄로 변경하라고 내리는 판결이다. 불법으로 구금된 자의 신체의 자유 보장에 관한 *Loayza Tamayo v. Peru* 사건에서 원상회복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Loayza Tamayo는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사면에 의한 신체의 자유의 회복은 문제가 있다. 사면은 국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체의 자유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면은 무죄인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회복의 한계가 있다. 신체의 자유의 회복은 형법절차의 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최선이다’고 하였다.⁵²⁾ 미주인권재판소는 불법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인권침해 희생자의 형사상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국가는 희생자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기록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⁵³⁾ 이는 인권침해로 인한

49) *Supra* note(48), para. 246.

50) *Gomes Lund et al.(Guerrilha do Araguaia) v. Brazil*(Preliminary, Ojection, Merits, Reparations, and Cost), IACHR, 24 November 2010, Ser. C, No.219, para. 301.

51) *Supra* note(50), paras. 302-304.

52) *Loayza Tamayo v. Peru*(Monitoring Compliance), IACHR, 1 July 2011, paras. 20-23.

53) *Acosta Calderón v. Ecuador*(Monitoring Compliance), IACHR, 7 February 2008.; Herrera

희생자의 형사기록을 삭제함으로써 희생자가 입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보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의 원상회복명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결은 남미국가들의 지리적 특성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원주민의 토지에 관한 사건이다. 원주민의 경우 선조 때부터 일정한 지역에 정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토지에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의 소유인 토지이기 때문에 선조 때부터 자리 잡은 거주지역에서 이전하라는 것과 관련된 사건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니카라과, 파라과이, 수리남에서 원주민 부족의 토지에 관한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원주민에게 토지를 반환, 경계를 표시하는 등 원주민에게 선조 때부터 정착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가의 판결준수의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니카라과는 위 3개국 중에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하게 준수한 유일한 국가이다. 니카라과는 Mayagna(Sumo) Awas Tingni Community v. Nicaragua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의 배상명령을 받아들여 Awas Tingni의 토지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다.⁵⁴⁾ 파라과이 정부는 Yakye Axa Indigenous Community v. Paraguay 사건에서 Yakye Axa, Sawhoyamaya, Xakmok Kasek의 원주민이 소유한 선조 토지 일부를 반환하라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다.⁵⁵⁾ 그 후 파라과이는 투표를 통하여 원주민이 소유한 선조 토지에 대한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였지만, 대체 토지를 구입하여 원주민을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⁶⁾ 수리남은 Moiwana Community v. Suriname 사건에서 원주민이 소유한 선조 토지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and Rights)를 신설하였지만 중요한 진전은 없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와 같이 불법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와 압류

Ulloa v. Costa Rica(Monitoring Compliance), IACHR, 22 November 2010.

54) Mayagna(Sumo) Awas Tingni Community v. Nicaragua, IACHR, 3 April 2009, para. 11.

55) Yakye Axa Indigenous Community v. Paraguay(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17 June 2005, Ser. C, No.125, para. 242.

56)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and-updates/news>

된 재산의 반환 또는 원주민이 소유한 선조토지의 반환에 관련된 회복조치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3) 만족조치

미주인권재판소 만족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것과 인권침해 희생자의 유해의 발굴 및 유가족에게 인도라는 판결이 대표적 사례이다.⁵⁷⁾ 미주인권재판소는 과테말라에서 저명한 인류학자가 살해당한 Myrna Mack Chang v. Guatemala 사건에서 과테말라 정부에게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만족조치를 하라고 판결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의 추모식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만족조치 판결을 준수하였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행을 언론매체나 웹 사이트에 공개하는 국가도 있다. 에콰도르의 정의와 인권청(Ecuadoran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은 정식으로 미주인권재판소가 에콰도르 정부에게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피해자 전원에게 에콰도르 공영방송국을 통하여 공식적인 사죄를 하였다. 또한 Tibi v. Ecuador 사건⁵⁸⁾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프랑스 국민이었기 때문에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프랑스 주요일간지에 공식적으로 사죄의 기사를 올렸다. Radilla pacheco v. Mexico 사건⁵⁹⁾에서 멕시코 정부는 사건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여, 주요 일간지와 웹 사이트에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공표하고 정부 주도로 피해자의 위령비를 설치하는 등의 공식적인 행사를 하였다. 이 사건 미주인권재판소의 배상명령 및 만족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례이다. 위와 같이 미주인권재판소의 만족조치에 관련하여 완벽하게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지역의 실종자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자의 시신을

57) Serrano Cruz v. El Salvador(Monitoring Compliance), "considering" para. 11; Zambrano Vélez et al. v. Ecuador(Monitoring Compliance), IACHR, 21 September 2009, para. 24.; Vargas Areco v. Paraguay(Monitoring Compliance), "considering", para. 16.

58) Tibi v. Ecuador(Monitoring Compliance), IACHR, 3 March 2011, "considering", para. 10.

59) Radilla pacheco v. Mexico(Monitoring Compliance), IACHR, 19 May 2011, declares para. 1.

가족에게 인도하라는 판결한 24건의 사례에서 판결을 준수한 사건은 극소수이다.⁶⁰⁾ 미주인권재판소는 후지모리 대통령 재직당시 교수와 대학생들의 살해와 강제실종에 대한 *La Cantuta v. Peru* 사건⁶¹⁾에서 페루정부에게 희생자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페루정부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1982년 4명의 군인이 과테말라 도스 에레스 북부지역 마을에서 주민 250여명을 학살한 것과 관련된 *Las Dos Erres Massacre v. Guatemala* 사건에서는 미주인권재판소는 학살 장소에 희생자의 시신을 발굴 및 DNA검정을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하라고 하였고, 과테말라 정부는 범죄과학, 문화인류학재단(Forensic Anthropology Foundation of Guatemala)을 통하여 일부 이행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희생자의 유해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44기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DNA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볼리비아 정부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준수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국가는 유해발굴에 투입되는 기본적인 비용 부족이라는 재정적 부담으로 판결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이다. 이러한 종류의 판결준수의무 관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강제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유해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부서를 신설하고 DNA를 감정하도록 국가에게 명할 수 있다. 국가는 행정기관에 유해발굴에 대한 계획, 유해발굴 장소의 특정,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특정해야 한다'고 하였다.⁶²⁾

미주인권재판소가 만족조치의 판결을 내리면 판결 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는 국가도 있다. *Girls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판결하였다.⁶³⁾ 도미니카 공화국

60)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한 사건은 *Juan Humberto Sanchez v. Honduras* (Monitoring Compliance), IACHR, 21 November 2007.; *Las Palmeras v. Colombia* (Monitoring Compliance), IACHR, 3 February 2010.; *Paniagua Morales et al. v. Guatemala* (Monitoring Compliance), IACHR, 27 November 2007.; *Street Children* (Villagran Morales et al.) v. Guatemala (Monitoring Compliance), IACHR, 27 January 2009.

61) *La Cantuta v. Peru* (Monitoring Compliance), "considering", para. 19.

62) *Supra* note(61), paras. 13-16.

정부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은 지불하였지만, 공식적인 사죄는 없었다.⁶⁴⁾ 또한 Carpio Nicolle v. Guatemala 사건⁶⁵⁾에서도 미주인권재판소는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판결하였지만, 과테말라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가 문헌상의 의무이지 의무위반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인권의식과 효율적인 행정적 처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발방지의 보장

재발방지의 보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발방지 보장에 관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배상명령과 함께 국내법을 미주인권협약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판결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칠레 정부는 *Caude Reyes et al. v. Chile*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국가행정에 관한 정보 액세스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⁶⁶⁾ 이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 금지 조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규정과 상반되는 전근대적 의식을 규정한 헌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판결하였다. 칠레 입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헌법을 개정하였다.⁶⁷⁾

63) *Girls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No. 130, para. 235.

64) *Girls Yean and Bosico v. Dominican Republic*(Monitoring Compliance), IACHR, 10 October 2011, "considering", para. 11.

65) *Carpio Nicolle v. Guatemala v. Guatemala*(Monitoring Compliance), IACHR, 1 July 2009, "considering", paras. 30-33.

66) *Caude Reyes et al. v. Chile*(Monitoring Compliance), IACHR, 24 November 2008, "considering", para. 8.

67)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Olmedo-Bustios et al.)v. Chile*(Merits, Reparations, and

미주인권재판소는 Zambrano Vélez et al. v. Ecuador 사건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인권의 보호와 관한 입법과 행정규칙, 특히 에콰도르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에 일정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판결하였다.⁶⁸⁾ 이에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국가 비상사태시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⁶⁹⁾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부가적 조치는 이 분야에서 미주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자국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것에 관하여 심사한 Herrera Ulloa v. Costa Rica 사건⁷⁰⁾에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미주인권재판소의 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형사절차법을 개정하고,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Cabre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Mexico 사건⁷¹⁾에서는 인권을 침해한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선례⁷²⁾ 따라 멕시코 군법 제57조의 군인은 군사법원에서만 재판받는다는 규정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멕시코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권침해를 범한 군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오늘날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판결준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가 국내의 사법결정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국가의 준수 의무는 일관적이지 않다. Tristán Donoso v. Panama 사건⁷³⁾에서 허

Costs), IACHR, 5 February 2001, Ser. C, No.52. operative para.5.

68) Zambrano Vélez et al. v. Ecuador(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4 July 2007, Ser. C, No.166. operative para. 9.

69) Supra note(61), paras. 32-34.

70) Herrera Ulloa v. Costa Rica(Monitoring Compliance), IACHR, 24 November 2008, "considering", para. 11.

71) Cabre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Mexico (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paras. 205-207.

72) Rosendo Cantú et al. v. Mexico(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31 August 2010, No.216. paras. 221-222.; Fernandez Ortega et al. v. Mexico (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30 August 2010, Ser. C, No.215. paras. 238-239.

73) Tristán Donoso v. Panama(Monitoring Compliance), IACHR, 1 September 2009.

위 고발로 유죄가 된 희생자에게 미주인권재판소가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에 파나마 법원은 희생자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 파나마 대법원은 재심에서 '파나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였다.⁷⁴⁾

페루는 Cantoral Benavides v. Peru 사건⁷⁵⁾과 Cesti Hurtado v. Peru 사건⁷⁶⁾에서 희생자에게 내린 유죄의 선고를 무죄로 해야 한다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준수하고 인신보호 판결을 실행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석방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La Cantutua v. Peru 사건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지만,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준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에콰도르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2500명 이상의 경찰관에게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행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이행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경찰관도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주인권재판소는 Tibi v. Ecuador 사건에서 내린 의학·정신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에서 판결준수의무의 이행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5) 조사, 기소, 처벌의 의무

조사, 기소, 처벌의무는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자를 국가가 조사하여 기소,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 국가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지만, 조사, 기소, 처벌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74) Supra note(73), para. 12.

75) Cantoral Benavides v. Peru(Monitoring Compliance), IACHR, 17 November 2004, declares1 (d),(e).

76) Cesti Hurtado v. Peru(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Judgment on the Merit), IACHR, 19 November 1999, Ser. C, No.62, para. 6.

인권침해의 책임자가 정부의 고위관료들이고, 이들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원이 국내구제를 이행하기 이전에 판결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조사, 소추, 처벌의무를 준수한 예도 있다. 페루는 Castillo Páez v. Peru 사건에서 Castillo Páez의 실종과 관련된 16명의 경찰관을 형사고소하고, 그 중 4명을 유죄의 선고를 내렸다.⁷⁷⁾ 대통령 경호관이 살인을 교사한 것에 관한 Myrna Mack Chanf v. Guatemala 사건에서는 과테말라 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관련자를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번복하여서 징역 25년을 확정하였다.⁷⁸⁾

미주인권재판소는 일부 사건에서 체약국의 사면법, 시효법의 공소시효, 형법의 소급효, 기판력,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등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하였다. 사면법은 국내에서 법이 정하는 특별한 기간에 벌어진 일정한 범죄에 대한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사면법은 미주인권협약의 규정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가가 사면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권침해 가해자의 조사, 처벌과정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친족의 권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⁷⁹⁾ 사면법에 관해서는 Barris Altos v. Peru 사건⁸⁰⁾ 이후 브라질을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폐지하였다.

시효법은 공소시효에 관련된 법으로서 공소시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사건에서도 시효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이 완료되면 피고를 소추할 수 없다. Bueno Altos v. Argentina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시효법은 유효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 기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⁸¹⁾ 그

77) Castillo Páez v. Peru(Monitoring Compliance), IACHR, 3 April 2009, "considering", para. 8.

78) Myrna Mack Chanf v. Guatemala(Monitoring Compliance) "considering", paras. 7-8.

79) Manuel Cepeda Vargas v. Colombia(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No. 213, para. 216.; Almonacid Arellana et al. v. Chile(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26 September 2006, Ser. C, No.154, paras. 154-155.; Gelman v. Uruguay(Merits and Reparations), IACHR, 14 March 2001, Ser. C, No.75, para. 41.

80) Barris Altos v. Peru(Merit), IACHR, 24 February 2011, Ser. C, No.221, para. 226.

81) Bueno Altos v. Argentina(Monitoring Compliance), IACHR, 5 July 2011, "considering",

러나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그 후 이 판결을 번복하고 사건을 재심사하였다. 이와 같이 살인, 고문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 하에서 강제실종, 조사법적 사형집행, 고문 등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는 없다. 미주인권협약 체결국 중에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 조약⁸²⁾을 비준한 국가에서는 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6)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검토

미주인권재판소는 보상적 손해배상 조치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인권침해에 인하여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단순한 배상명령의 준수여부 보다는 객관적, 합리적 근거로 배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과 친족들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금액을 보장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결준수 의무의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만족조치는 기본적인 배상금 지급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해발굴, 발굴한 유해 인도 등 실질적,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 감성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만족 조치는 외형적 보상과는 달리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만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외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로서 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재발방지 보장은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의 단순한 이행뿐만 아니라 미주인권협약 상 보장되는 인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를 이행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의 개정, 폐지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paras. 21-23.

82)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을 통하여 인권보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기소, 처벌의 의무에 관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피고인의 형사상 절차에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고, 국가의 범죄 소추 해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일반적인 시효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판결준수의무의 한계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 의무는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의 국제적 강제,⁸³⁾ 관리능력, 국내정치⁸⁴⁾ 등의 요인이 미주인권재판소 판결 준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국제 강제력은 실질적, 사회적인 제재와 혜택을 체결국에 부과함으로써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결국은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으로 평가가 좋은 국가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국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국가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권 준수를 다른 분야의 교섭, 예를 들면 무역교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면, 국제적인 교섭에서 효과적이고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⁸⁵⁾ 둘째, 국가의 관리능력은 국제적 규칙의 성질과 국가의 이행능력의 관계이다. 국가의 관리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인권 보장이 어렵다. 국제적 규칙이 모호한 경우에 국가는 규칙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곤란하거나 국가가 국제적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지적인 전문가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미주인권재판

83) Beth Simmons, "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r: Commitment and Compli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Issue 04, December 2000, p. 820.

84) George Downs, David M. Rocke & Peter Barsoom, Is the Good News about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Issue 03, 1996, p. 377.

85) Darren Hawkins, Wade Jacoby, "Partial Compliance of the European and Inter-American Courts of Human Rights", *Journal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5, p. 41.

소 판결준수 여부의 문제 중 체약국에서 판결을 완전하게 이행할 의지는 있지만 관리능력의 부족과 시간적인 문제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문제로 판결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부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부분적인 이행도 판결준수로 인정하면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는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⁸⁶⁾ 셋째, 국내 정치는 준수는 정책변경 비용과 이익의 문제와 결부된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체약국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체약국이 그 판결을 이행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과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법과 정책의 변경은 관련된 행정기관의 신설, 배상금의 지불,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을 이행이 정책비용과 이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결준수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⁸⁷⁾

현실적으로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이 미주인권재판소의 준수명령을 이행여부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변화하면서 군사정권시대에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의 청산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의사, 정책변경의 비용과 이익의 문제로 인하여 판결준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이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최대 이유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이행절차를 확립하거나 국제배상명령을 이행할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없다.⁸⁸⁾ 둘째, 체약국들의 행정부는 사건을 통하여 미주인권재판소와 상호교류하고 미주인권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체약국 사법부의 미주인권재판소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가 판결한 배상을 이행하는 행위를 할 법적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기판력, 시효제도, 사면과 같은 국가의 규범은 인권

86) Darren Hawkins, Wade Jacoby, op.cit, p. 42.

87) Jana Von Stein, Do Treaties Constrain or Screen? Selection Bias and Treaty Compli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ssue 04, 2005, p.611

88) Jo M. pasqualucci, op.cit, p. 330.

침해를 조사, 기소, 처벌하도록 판결한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의 준수를 저해하고 있다. 넷째, 체약국의 사법구조에 따라 판결준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내 판결을 심의하는 미주인권재판소 조직 권한에 이의 제기 및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이 국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Lopez Mendoza v. Venezuela 사건에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베네수엘라 헌법과 주권을 침해하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⁸⁹⁾ 이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의 집행유무는 국가의 정치적 의사뿐만 아니라 국내법원의 사법적 절차⁹⁰⁾와 같이 헌법상, 행정상 법적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근거로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에서 판결을 통하여 체약국에 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국가에게는 실질적으로 ‘제4의 법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는 목적은 국내법원의 관할권 하에 결정한 판결을 심리하는 항소심이 아닌 미주인권협약을 비준한 체약국이 국제적 인권의무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⁹¹⁾ 미주인권재판소는 특히 Due Process에 관하여 국내의 상급 법원의 절차를 포함하여 특정한 국내절차가 미주인권협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주인권재판소의 역할은 미주인권협약에 규정이 국내법상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⁹²⁾’고 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법원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법상 개인의 인권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확인과 승인 때문에 미주인권

89) Human Rights Watch, Venezuela Supreme Court Disregards Rights in Election case, 18 October 2011.

90) Viviana Krsticevic, “reflexiones sobre la ejecución de las decisiones del Sistema Interamericano de Protección de Derechos Humanos”, Sur, Rev. int. direitos human, vol.6 no.11, 2009, pp.15-16.

91) Cesti Hurtada v. Peru(Preliminary Objections), IACHR, 26 January 1999, Ser. C, No. 49, para. 47.

92) Chaparro Alvarez and Lapo Íñiguez v. Ecuador(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IACHR, 21 November 2007, Ser. C, No. 170, para. 22.

재판소에 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국내법원의 절차가 미주인권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미주인권협약을 비준한 체약국은 미주인권협약 상 인권보장의 성질과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기능 및 성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 미주인권협약과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약상 인정되는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수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인권보장체계의 성립과 전개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면 강력한 저항이 초래된다는 시대적 상황과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IV. 결론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과 미주인권재판소 규정, 절차규칙 등에 따라 국가에게 미주인권재판소 판결과 결정을 준수하도록 체제를 확립하였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군사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되면서 자국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자국에서 조약내용,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미주인권협약을 탈퇴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9년에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 권고에 반발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주인권협약을 탈퇴하였다. 2013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탈퇴를 하였다. 2014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의 차별 정책이 미주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에 반발하여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 이유는 미주인권

93) 고봉진,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법과정책』 제1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20면.

재판소의 판결 이행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과 자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권의식의 결여가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지역인권기구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면 지역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과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판결준수의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높은 유럽지역과 달리 미주지역의 이러한 외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지역적 인권보장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주인권협약 체결국들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제소된 사건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결하면 해당 국가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제도의 정비 등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이행하려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인권의 보장은 외형적인 안정과 발전을 기반으로 보장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외형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인권은 다음 시기나 다음 세대로 미루고자 했던 우리의 경험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근본이념을 기반으로 외형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봉진,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법과정책』 제1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 김태천,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인권법연구』 제1호, 인권법연구소, 2005.
- 박미경, “미주지역 인권보호 체제에서 미주인권위원회의 활동 : 미주인권협약 제정 이전의 상황을 중심으로”, 『국제소송법무』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찬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법조』 제56권 제6호, 법조협회, 2007

이근관, “미주인권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Beth Simmons, “International Law and State Behavior: Commitment and Compli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Issue 04, December 2000.

Brunner Lisl, “The Rise of Peoples’ Rights in the Americas: The Saramaka People Decision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2008.

Cerna Christina.,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ts Organization and Examination of Petitions and Commun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Darren Hawkins, Wade Jacoby, “Partial Compliance of the European and Inter-American Courts of Human Rights”, *Journal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5

David C. Bauarte, “Strategizing for Compliance: The Evolution of a Compliance Phase of Inter-American Court Litigation and The Strategic Imperative for Victims’ Representatives”, *27 Am. U. Int’l L. Rev.* 263

David J. and Harris and Stephen Livingstone, *The Inter-American Sstem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Dinah Shelton,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10 Am. U. J. Int’l L. & Pol’y*, Fall 1994.

Dinah shelton,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George Downs, David M. Rocke & Peter Barsoom, “Is the Good News about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Issue 03, 1996

Habeas Corpus in Emergency Situations(arts. 27(2), 25(1) and 7(6) America Convent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OC-8/87 of January 30, 1987.

IACHR, *Monitoring Compliance with Judgment, Order of the Court*, IACHR,

2005.

IACHR,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Annual Report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2009.

IACHR, *Annual report 2013*, 2013.

James L. Cavallaro & Stephanie Erin Brewer, "Reevaluating Reg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ase of the Inter-American Court", 102 *Am. J. Int'l L.* 768, 2008.

Jana Von Stein, "Do Treaties Constrain or Screen? Selection Bias and Treaty Compli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ssue 04, 2005.

Jo M. pasqualucci,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Cambridge, 2013.

[Abstract]

A Study on Duty of Compliance with Ruling i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Light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Focusing on Judgements b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

Lee, Hyeong-Seok

*Doctor of jurisprudence, Wonkwang University,
Bonghwang honors school, Research Professor*

What protects and promotes all the human rights without distinction is the basic ideology of a law-governed country. Through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a country needs to secure so that everybody can live with

dignity regardless of any conditions such as gender, race, and nation. The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like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e those that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everybody's way to pursue defini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when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would collapse. The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American continent, which is composed of 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s the essentially complement system for reinforcing the protection that is prescribed in the domestic law across the America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delivers judgement to the corresponding state by hearing and deciding a human rights violation case in the American continent. However, if the corresponding country doesn't properly fulfill the judgement that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made for the human rights guarantee, the right contents in light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ll be what is literal and formal. Hence,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giving the duty of compliance with ruling i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to the treaty powers in express term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tents and the execution on the duty of compliance with ruling in light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 focusing on the judgements made b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Key words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Duty of Compliance with Ruling, Measure of execution